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2014. 12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등에 변화가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따라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지역복지시책”을 “지역보장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를 둔다”를 “한다) 및 실무분과를 둔다.”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1항 중 “20인”을 “4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3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인”을 “4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읍면동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고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 등이 많은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⑨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 호선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따라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 -----.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1.지역사회보장계획----- -----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구미시의 사회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

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지역보장시책-----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다) 및
실무분과를 둔다.

④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 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

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
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사회복
지업무담당국장·구미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생 략)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
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
촉하며, 사회복지담당과장 및
보건의료담당과장을 당연직 위
원으로 한다.

⑥·⑦ (생 략)

<신 설>

-----40인-----
-----.

②-----「사
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
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
1조의 3에 해당하는 사람-----

-----.

③ (현행과 같음)

④-----

-----40인-----
-----.

⑤-----지역
사회보장 증진에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읍면동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고 사
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 등
이 많은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
함하여 10명이상으로 하되 읍면

<신 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
촉한다.

⑨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은 읍면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 호선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관 계 법 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소관 실·과		주민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배 정 미
	담 당	류 은 주
	담 당 자	백 은 영 (480-5123)